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

제정 2020. 02. 16.

개정 2022. 03. 22.

개정 2024. 06.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발전기금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에 기부금 또는 현물을 기부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①본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아래 기준에 따른 예우를 제공한다.

1. ◎ 간행물, 감사패, 기타 예우

예우내용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학교달력 발송	●	●	●	●	●	●
전달식 기념사진	●	●	●	●	●	●
온라인 명예의 전당 헌정	●	●	●	●	●	●
생일축하카드 발송	●	●	●	●	●	●
명절선물		●	●	●	●	●
경조사 화환		●	●	●	●	●
학교주요행사 초청		●	●	●	●	●
감사패 증정			●	●	●	●
생일선물				●	●	●
기부자 명의 강의실 명명				●	●	●

◎ 학교시설 이용 예우 (수업료 감면)

예우내용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도서관 이용(열람대여)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일반과정에 한함)	10%	15%	20%	30%	무료	무료
대학원 수업료 감면	-	-	50%	60%	70%	무료

* 장학금 중복 수혜의 경우 기부자에게 유리한 한 개만 적용됩니다.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모든 강좌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대학원 수업료 감면, 평생교육원 예우는 누적납입액이 예우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제공됩니다.

◎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예우

예우내용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진료비(비급여) 감면	20%		30%			
한약 구입 / 병실차액 / 앰블런스비용 감면	20%	25%	35%	40%		
병원장 특진(예진)	-	-	제공			
예약 및 진료 편의(동행)	-	-	제공			

②월 정기 기부자에게는 누적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삭제) (2024.06.13.)

④뉴스레터는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기부자에게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송한다.

⑤감사패 증정은 일시기부 뿐만 아니라 누적기부액이 예우제공 기준에 해당되는 기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한방병원 한약구입 및 진료비(비급여) 감면 예우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⑦명절선물은 누적기부액 1천만원 당 1년간 2회(설, 추석 각 1회) 발송한다.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1. 재직 중 대학 또는 법인에 정기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퇴직 시 일시기부금을 납부한 교내 구성원

1.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고액기부자

⑨대학원 수업료를 기부금액(1천만원 이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06.13.)

⑩평생교육원 수강료를 기부금액(1백만원 이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06.13.)

⑪한방병원 진료비(비급여)감면을 기부금액(1백만원 이상)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06.13.)

⑫한방병원 한약구입, 병실차액, 앰블런스비용 감면을 기부금액(1백만원 이상)에 따라 최대40% 감면 적용하며, 고액기부자(1천만원 이상)에게 병원장 특진(예진) 예약 및 진료 편의(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설 2024.06.13.)

제4조(기타) 이 지침의 변경은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발전기금팀-48, 2022.03.22.)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22학년도 기부자부터 예우에 적용한다.

부칙 (대외협력팀-511, 2024.06.13.)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24학년도 기부자부터 예우에 적용한다.